

제192회 영등포구의회  
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 폐지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12. 9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97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구의 출연금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하도록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2014년 10월 16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4월 17일에 「영등포구 장학재단」을 설립함에 따라 영등포구 장학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함.

### 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본 폐지 조례안은 2015.4.17. “영등포구 장학재단”이 설립되어 운용됨에 따라,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 “영등포구 장학기금”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- 2009.10.1. 영등포구 관내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, 영등포구 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운용·관리 되어왔으나,
-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교육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, 2014. 10.16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고 2015.4.17.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 되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장학기금을 폐지하는 것임.
- 참고로, 2015년도 장학기금은 3억 3,992만 1천원이 조성되어 3억 2,5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 1,447만 1천원은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될 예정임.